



## 소방기본법

[시행 2024. 7. 31.] [법률 제20156호, 2024. 1. 30., 일부개정]

소방청 (대응총괄과-총괄,소방활동,소방력동원) 044-205-7562,7572  
 소방청 (119종합상황실-119종합상황실운영) 044-205-7082  
 소방청 (기획재정담당관-국고보조) 044-205-7227  
 소방청 (혁신행정법무담당관-소방기관설치) 044-205-7247  
 소방청 (보건안전담당관-손실보상) 044-205-7412  
 소방청 (보건안전담당관-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) 044-205-7416  
 소방청 (구조과-생활안전활동) 044-205-7617  
 소방청 (화재대응조사와-소방용수,화재조사,의용소방대) 044-205-7473,7475,7478~7479  
 소방청 (화재예방총괄과-소방안전원) 044-205-7442  
 소방청 (생활안전과-소방교육·훈련,소방박물관,소방안전교육사) 044-205-7666,7668,7667  
 소방청 (소방산업과-소방산업육성) 044-205-7502

### 제1장 총칙 <개정 2011. 5. 30.>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7. 8. 3., 2010. 2. 4., 2011. 5. 30., 2014. 1. 28., 2014. 12. 30.>

1. "소방대상물"이란 건축물, 차량, 선박(「선박법」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), 선박 건조 구조물, 산림,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.
2. "관계지역"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·경계·진압, 구조·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.
3. "관계인"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·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.
4. "소방본부장"이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서 화재의 예방·경계·진압·조사 및 구조·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.
5. "소방대"(消防隊)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, 재난·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·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.
  - 가. 「소방공무원법」에 따른 소방공무원
  - 나. 「의무소방대설치법」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(義務消防員)
  - 다.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용소방대원(義勇消防隊員)
6. "소방대장"(消防隊長)이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, 재난·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.

**부칙** <제20156호, 2024. 1. 30.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